

CESCO Food Safety NEWSLETTER

2019. 5월 3호 _ Vol. 139

발행처 _ (주)세스코 식품안전연구소

주소 _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 10길 46 (주) 세스코 터치센터

대표번호 _ 02-2140-0288 http://cescofood.co.kr

NEWS 식품안전 주요 NEWS

일회용기저귀 등 위생용품 전국 합동단속 실시

- 위생용품제조 위생처리업체 650여 곳 일제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 동안 일회용 기저귀 등 위생용품 전국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던 위생용품의 관리를 식약처로 일원화하면서 「위생용품 관리법」을 제정·시행(18.4.19)한 이후 처음 실시하는 전국 단위 점검으로, 전국에 있는 위생용품 제조·위생처리업체 650여 곳을 대상으로 하여 6개 지방식약청, 17개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이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신고 영업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자가품질검사 및 표시기준 ▲허용외성분 사용 여부 ▲위생처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위생물수건, 일회용 면봉 등에서 부적합 이력이 있는 품목을 수거하여 '기준 및 규격' 적합 여부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위생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행정제재와 벌칙

위반 내용	행정제재	벌칙
무신고 영업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전부: 품목제조정지 1개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50%이상: 품목제조정지 15일 50%미만: 시정명령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5월 16일)



세스코 터치센터 전경

세스코 식품안전서비스



세스코 시험분석 서비스 (자가품질검사, 영양성분, HACCP 위해요소)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제100호(식품), 제59호(축산물)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

자가품질검사 서비스

식품/축산물 제조·가공,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한
기준·규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검사



첨단 분석장비 및 전문인력과 분석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뢰성을 보증 하는 국가공인검사기관

가정의 달 맞아 축산물 생산업체 66곳 점검, 16곳 적발

-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한 식품제조업체 2곳 추가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의 달·나들이철을 맞아 외식, 모임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축산물 생산업체 66곳을 점검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허가 또는 무신고 영업(2곳) ▲유통기한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3곳) ▲생산일지 또는 원료수불부(원료의 입고·출고·사용과 관련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 미작성(5곳) 등이다. 또한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2일까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24곳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영업정지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2곳을 적발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각 시기별로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과 축산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업체에 대해 지도·점검 등을 강화하여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행정제재와 벌칙

위반 내용	행정제재	벌칙
무허가.무신고 영업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생산일지, 원료수불부 미작성	생산일지 : 영업정지 15일 원료수불부 : 영업정지 5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가품질검사 미 실시	전부 : 품목제조정지 1개월 50%이상: 품목제조정지 15일 50%미만: 경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5월 16일)

🔍 정책 / 법령 정보

'수입 어류의 머리, 어류 및 연체류의 내장' 위생관리 강화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출국에서는 식용으로 관리하지 않아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식품에 대해서는 수출국의 위생관리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식품을 어류의 머리, 어류 및 연체류의 내장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 중 수입식품 등의 검사결과, 위반 이력 또는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등에 따라 영업자를 구분하여 차등 관리하는 권한의 일부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5월 14일)

세스코 식품안전감사 서비스

[P1] 식품위생진단
“약속된 기준을 잘 실행하고 있는지” 점검

[P2] 식품안전진단
“실행해야 할 기준이 적정하고 실행이 양호한지”
평가&진단

내 사업장 식품안전 체계의 새로운 변화!!



고객 니즈에 맞춘 식품안전감사 제공

- 업종 특성, 글로벌 위생관리기준 접목
- HACCP컨설팅 know-how 접목
- Data 기반의 객관적 자료, 문제 발생 사전예방 가능



해충방제+Food 복합서비스로 시너지 효과

- 시설+설비 2개 관점 진단 ▶ 이물 관리 특화
- ▶ 이물 클레임 예방

가공식품의 원산지 활자크기 조정과장평,자간기준생거

- 「농수산물의원산지 표시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위생법 등의 개정으로 식품 표시방법이 개선됨에 따라 가공식품 원산지표시와의 조화가 필요하고, 다양화 되고 있는 통신판매에 대응하기 위해 표시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며, 음식점 원산지표시 범위의 확대 이후 현장적용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일부개정하여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공품 원료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를 10포인트 진하게 표시토록 통일 ▲전자상거래법의 별도창 표시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판매 제공시 포장재 표시가 어려운 경우 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조리원료 중 소고기 가공품에 대해 식육종류표시 생략을 허용하고, 거래명세서 등으로 원산지확인이 가능한 경우 보관장소와 조리 중인 재료의 원산지표시 생략 허용 ▲부위명으로 품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와 원산지가 다양한 품목으로 여러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 음식명 표시 명확화 ▲국가간 이동에 따른 가축(소, 돼지, 닭 등)의 원산지 전환시 함께 표시하는 출생국 표시 삭제 이다.

* 본 건은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입법/행정 절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5월 7일)

행정제재처분확정 전 폐업신고 불가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공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행정제재 처분의 사전통지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도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제재처분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영업자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해당 행정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폐업신고를 하는 등 해당 규정을 악용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도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현재 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압류·폐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벌금 또는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바, 앞으로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 정지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이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5월 1일)

세스코 표시컨설팅 서비스



비용

짙은 법령 변경에 따른 인쇄 등반 변경 최소화 유도
이슈로 인한 불용&회수 제품 최소화

인력(역량) 관리

짙은 인력 변화에 따른 관리 역량 유지
표시 관리 인력의 업무 효율성 증대

마케팅

최소 표시사항 적용으로 마케팅포인트 면적 증가
디자인 통일성 향상

【 표시 검증 】

- 표시사항, 셀링포인트
- 솔루션 제공

【 표시 작성 】

- 표시사항, 영양성분표 작성 및 솔루션 제공

【 납품 적합성 검토 】

- 협의 기준에 따라 제품의 납품 가부를 결정

【 Online/광고물 검증 】

- 셀링포인트/체험기/댓글 등 허위,과대 광고 검증

제품 출시 처음부터 끝까지 법규 기반의 체계적인 법규 리스크 관리

⚠️ 주요 단속 정보

'19년 5~6월 점검 일정

점검명	점검기간
○ 분쇄가공육제품 제조업체 점검	5.13~5.31
○ 하절기 대비 맥주(소규모 포함) 제조업체 점검	5.20 ~ 5.24
○ 다빈도 이상사례 신고 건강기능식품 수거 검사(1차)	6.3 ~ 6.14
○ 배달음식점, 장례식장 조리.판매업체 점검	6.10 ~ 6.14
○ 군남 식품제조가공업체 합동점검(2차) [점검대상] 가공식품 및 농.수산물 등	6.10 ~ 6.14
○ 하절기 축산물위생 취약분야 점검	6.10 ~ 6.28
○ 과실주, 일반증류주 제조업체 점검	6.17 ~ 6.21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산업 NEWS

식약처, 식품 표시 규정 및 식품공 전 설명회 개최

1. 참석대상 : 식품 등 제조·수입, 판매 영업자, 지자체 및 지방청 공무원
2. 일정 및 장소 : '19.5.17(금) ~ 5.31(금)
오후 2시~5시/전국 6개 지역 순회
 - 5.17(금) : 부산 - 상공회의소 대강당(1층)
 - 5.21(화) : 대전 - 통계교육원 대강당
 - 5.22(수) : 서울 - 마포구청 대강당(2층)
 - 5.24(금) : 제주 - 제주도 제2청사 자유실(2층)
 - 5.31(금) : 광주 - 김대중컨벤션센터 201호
 - 5.31(금) : 대구 - 상공회의소 대회의실(10층)
3. 세부 내용

시간	내용	비고
14:00~15:30	○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법령 체계, 부당한 표시, 광고 등 ○ 「식품등의 표시기준」 주요내용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기준 및 방법」, 「유전자변형 식품등의 표시기준」 등	식품안전 표시인증과
15:30~15:40	휴식	
15:40~16:40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주요내용	식품기준과
16:40~17:00	질의응답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5월 13일)



HACCP 의무 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0호)
cescoacademy.co.kr

HACCP 정기 과정 (5/28, 6/12)

- 년 1회 HACCP 팀장이 반드시 이수 (법정 교육)
- 효율적인 HACCP 사후관리 방법, 요령 습득

HACCP 경영자 과정 (5/28, 6/12)

- HACCP 추진 시 최고경영자의 역할 인식
-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가 참석

HACCP 팀장 과정 (5/29~30, 6/13~14)

- 신규로 HACCP을 인증받기 위해 필요한 법정 교육
- '세스코 시뮬레이션센터'에서 현장 실습까지 한번에!



위생용품 위생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제4호)
cescoacademy.co.kr

신규 / 보수 (6/25, 7/26)

- 위생용품관리법 제9조에 따라 위생용품제조업, 위생용품 수입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영업자 대상 법정 의무 교육
- 신규 : 제조업/수입업/위생물수건처리업 영업신고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 과정 (최초 4시간)
- 보수 :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 과정 (매년 3시간)



식품 전문 교육

cescoacademy.co.kr



표시 연관 법규와 식품표시 실습 (7/9)

- 최신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과 표시 연관 법령을 한번에 (식품위생법, 공전, 원산지표시법 등 기타 법령)
- 사례, 실습 위주로 원산지, 영양성분, 표시사항 작성/분석, 오류사항 찾기 실습도!~

식품공장 해충 방어와 이물분석 (6/28)

- 식품공장 유래 주요 해충의 특성을 알아보고 제어법 제공
- 주요 이물의 등징방법과 취약포인트 개선방안